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284 발의연월일: 2024. 9. 25.

발 의 자:한정애·박홍근·서영교

신정훈 · 송옥주 · 허종식

조인철 • 추미애 • 박희승

소병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자동차등(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함)의 경우에는 이러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않음.

그런데 최근 서울시의 무인 공공자전거인 따름이와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폭주 집회'예고에 경찰관 수백명이 동원되었고, 여러대의 따 릉이와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위협하고 단 속 경찰관을 조롱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자전거등의 경우에도 공동 위험행위 금지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을 도입해 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운전자에게도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1항 및 제156조제14호 신설).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 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 공동 위험행위를 한 자전거등을 운전 한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 ⑩ (생 략)	① ~ ⑩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		
	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전거등을 정당한 사		
	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		
	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교		
	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u>서는 아니 된다.</u>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56조(벌칙)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4. 제50조제11항을 위반하여</u>		
	공동 위험행위를 한 자전거등		
	을 운전한 사람		